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. 10. 6 선고 2016가단340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9. 22.

판결 선고 2016. 10. 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2,000,000원을 지급하고,
나. 포항시 남구 C 대 365㎡ 지상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 55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혜성

별지